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성수 소유물건
평가서번호	가온 2412-07-4055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정현철
의뢰번호	2024타경6880(감정인 : 김진모)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TEL:(051) 507-0667 FAX:(051) 507-0688

제 출 문

□ 본인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인은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진모

김진모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이 상 구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칠억일천칠백만원정 (₩717,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정현철		감정평가 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경매4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성수 (2024타경688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2.17	2024.12.17	2024.12.23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717,000,000
			이하	여백		
	합계					₩717,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진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목적에 의한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개요

2.1 총괄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4)		
건물명	삼성아파트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목	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사용승인일	1997.02.22
건물규모	동수	층수	호
	12	-1/25	728세대
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32,274.3		11,030.268
비고	-		



2.2 대상개요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권면적 (㎡)	전용률 (%)	용도	
기호	동	층/ 호수						공부	현황
1	107	2/ 202	164.91	85.2097	250.1197	74.85	65.9%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합계			164.91	85.2097	250.1197	74.85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4.12.17일로 하였음.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12.17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4. 기준가치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감정평가방법

6.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6.2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원법은 본건의 이용상황(아파트)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토지와 건물의 배분내역은 귀 원 요청에 의거 감정평가명세표 상에 별도 부기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기타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물적 동일성 여부 등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음.

- 점유부분의 위치확인 등

본건의 위치확인은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 점유사용부분에 의거 확인하였음.

- 그 밖의 사항

①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확정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음.

② 본건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에 부합함.

③ 본건은 현장 조사 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관련 공부와 외부 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2. 가격 참고자료

2.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11/12/1201	164.91	199.7816	4,244,740	700,000,000	2024.05.01 (1997.02.22)
2		107/16/1602	164.91	199.7816	4,911,770	810,000,000	2024.02.01 (1997.02.22)
3		111/20/2002	164.91	199.7816	4,760,172	785,000,000	2024.07.27 (1997.02.22)
4		107/1/102	164.91	199.7816	4,547,935	750,000,000	2023.08.21 (1997.02.22)

2.2 인근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1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11/6/601	164.91	5,803,165	957,000,000	2023.09.26 (1997.02.22)	경매
2		107/12/1201	164.91	5,724,334	944,000,000	2022.11.04 (1997.02.22)	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3 시세수준

구분	시세수준(원/㎡)	비고
본건 유사 아파트	4,000,000원/㎡ ~ 5,000,000원/㎡ 내외 수준	전유면적기준

의견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아파트의 시세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층별, 위치별,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남.

2.4 경매통계분석

(출처: 인포케어)

구분	종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비고
		낙찰가율(%)	낙찰율평균(%)	
최근 1년간 평균	집합건물/아파트	74.62	76.90	낙찰건수 35건
최근 6개월간 평균	집합건물/아파트	76.51	77.83	낙찰건수 19건

※ 기준통계기간은 2023.12.01 ~ 2024.11.30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 선정

본건 건물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하되, 본건은 아파트로서 용도, 층별효용 및 위치별효용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4를 본건에 적용할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4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07/1/102	164.91	199.7816	4,547,935	750,000,000	2023.08.21 (1997.02.22)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0).

5. 시점수정

5.1 지가변동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지역)

(출처: 국토교통부)

기간	변동률(%)	비고
2023.08.21 ~ 2024.12.17	1.01328	거래사례#4 거래시점~기준시점

5.2 매매가격지수(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부산권 기장군)

(출처: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3.07	2024.11	변동률(%)	비고
87.7	83.1	0.94755	83.1/87.7

5.3 시점수정치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나 본건의 경우 아파트로서 대상부동산의 특성 및 가격추이가 반영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 (0.9475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6.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구분	세부항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분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기호	동/층/ 호수				
1	107/2/ 202	1.00	1.00	1.01	1.010
의 견					
단지 외부요인		본건 기호(1)은 거래사례#2와 비교하여 동일 건물내에 위치함으로서, 단지 외부요인 대등시됨.			
단지 내부요인		본건 기호(1)은 거래사례#2와 비교하여 동일 건물내에 위치함으로서, 단지 내부요인 대등시됨.			
호별요인		본건 기호(1)은 거래사례#2와 비교하여 층별효용에서 다소 우세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

구분		거래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기호	동/층/ 호수						
1	107/2/ 202	4,547,935	1.000	0.94755	1.010	4,352,490	717,769,126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기준 결정단가 (㎡)	산출가액 (원)	결정가액 (원)
기호	동/층/ 호수					
1	107/2/ 202	164.91	250.1197	4,352,490	717,769,126	717,000,000
합계						71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 기준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기호	동/층/ 호수				
1	107/2/ 202	164.91	250.1197	4,352,490	717,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은 상기 참고가격 자료(시세수준, 감정평가전례, 통계분석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07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5층				
				1층 2~25층(각) 지하층	393.150 377.850 385.15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13	대	(내) 철근콘크리트조 2층 202호	32,274.3	164.91	717,000,000	비준가액
			(1)소유권 대지권	748,500 322,743,000	74.85			
합 계							₩717,000,000.-	
이 하 여 백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58,500,000
건 물 : 358,5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5층건 내 107동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7.02.22)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폐문부재)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등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보행자도로에 각각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상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동주택용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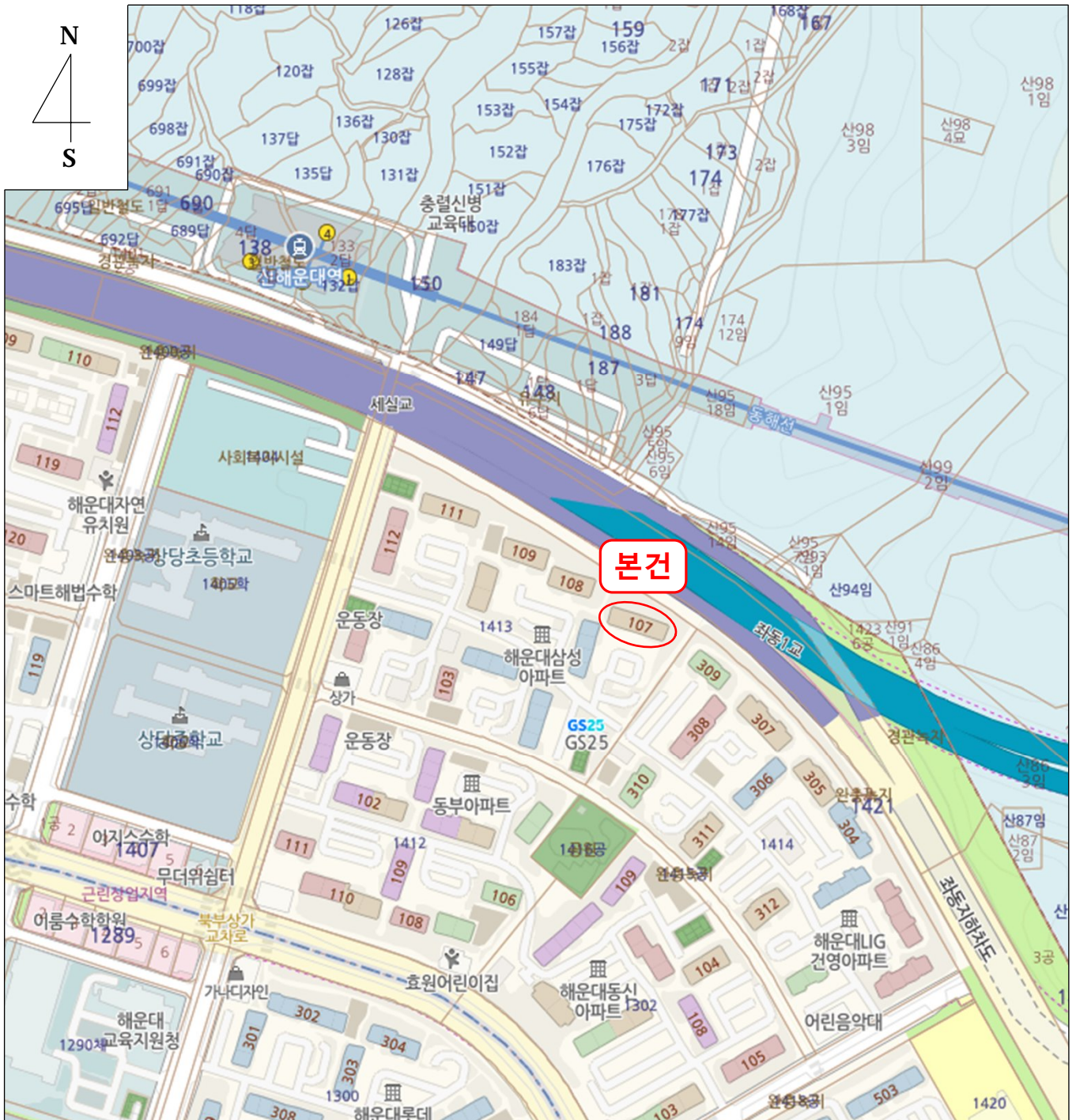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 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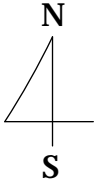
위 치 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07동 2층 202호>



건물개황도



None Scale



<삼성아파트 107동 2층 호별배치도>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전경